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4526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채지연

피 고 1. C영농조합법인

2. D

3. E

변 론 종 결 2024. 1. 23.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 C영농조합법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 B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영농조합법인,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영농조합법인,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원고 B과 피고 C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 A의 청구

피고 C영농조합법인,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부터 이 사건 2023. 1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원고 B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법인이 2012. 8. 27. 원고 A에게 경주시 F(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외 1필지를 과수관광영농단지로 개발하여 위 토지 중 주거용부지 포함 1필지 1,320㎡(400평)를 분할하여 위 원고에게 등기해 주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으로 1억 4천 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A에 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피고 법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원, 2012. 11. 1. 중도금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2. 8. 27.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A에 대한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B에 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 역시 피고 법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 2012. 11. 1. 중도금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5. 5. 11.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액 9,8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 용 증

금액 : 일금 구천팔백만원(₩98,000,000원)

위 금액을 원고 B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5.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로 하고 이자의 상환은 일시 또는 원금 상환시 일시에 납부하기로 한다.

차용일시 : 2012. 8. 27.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2012. 11. 1. 칠천삼백만원(₩73,000,000원)

라. 피고 법인은 2019. 3. 29.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확 약 서

피고 법인은 2012. 8. 27. 원고 A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일금 구천팔백만 원(₩98,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호간에 협의하여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원고 A에게 2019. 5. 31.까지 일금 구천팔백만 원(₩98,000,000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피고 법인 소유였던 F 토지는 2012. 6. 15. G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되었다가 2014. 7. 23. 피고 법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0. 4. 2.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관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 A에게 상환하기로 한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약서에 따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9. 6. 1.부터 피고 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A은 2012. 11.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은 본 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이 사건 A에 대한 매매계약 해소를 주장하고 있고, 원고 A과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피고 법인이 위 98,000,000원의 상환을 2019. 5. 31.까지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본 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계약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 법인을 상대로 2019. 5. 31. 이전에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법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법인의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총회결의가 필요하다거나 설령 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관련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21. 9. 29. 피고 법인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던 원고 A에게, 피고 법인과 별도로 자신이 원고 A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도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위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원고 A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바,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 및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4.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D은 2022. 9. 13. 이루어진 원고 B과의 대화과정에서 피고 법인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아가, 피고 E은 영농조합법인인 피고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상행위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관련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법인이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9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 B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15. 6.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채권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7.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행청구를 해왔고, 피고 법인 역시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2022. 9. 13.에도 피고 법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의 중단 사유에 대한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고,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피고 법인이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22. 9. 13. 피고 법인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단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 B은 피고 D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피고 D 역시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관련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역시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조합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피고 E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 관련

F 토지가 2020. 4. 2.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법인이 이 사건 B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한 원고 B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22. 11. 10. 피고 법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B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 B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